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4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기록원법안(위원회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
4.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2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1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13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13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13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13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13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13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13. 국회기록원법안(위원회안)	13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3
1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3
1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
18.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35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1월 5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6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공통 요구서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될 예정인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신설 이후 해당 직위에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이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은 행정실에서 작성된 초안이 맞습니까? 중인……

○**행정실장 서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중인 명단의 대통령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중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14대를 보면 홍인길 당시 총무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재만, 이정도, 이렇게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 왔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런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중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안이 만들어졌는지, 행정실에도 우리가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것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되어 왔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은 안은, 비서관 1명을 가지고 이렇게 30년에 걸쳐서 지켰던, 당연히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출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협치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중대고 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비서관 하나를 여기 출석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보면 뭐로 보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용산의 이중대·출장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문진석 위원님 반대로론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 코스피 3500을 바라보고 있고 또 복잡하고도 녹록지 않은 외교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최초로 특활비를 공개할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대통령실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정말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우리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는커녕 필터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매 사안마다 발목 잡기, 정쟁하기,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를……

○**유상범 위원** 갑자기 증인 출석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문진석 위원**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문진석 위원** 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진석 위원** 보통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총무비서관이 국정조사에 나오는 것도 관례였지요. 그러면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동의하지만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허니문은 고사하고 지금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불복 주장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하는 것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유상범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문진석 위원** 공당 아니지요. 그러면 그게 공당입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공당이에요?

○**곽규택 위원** 김현지를 불러내라는데 공당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유상범 위원** 김현지를 불러내라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문진석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를 이유가 있다고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문진석 위원** 뭐가 할 말이 없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당을 비난해.

○**문진석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들어 볼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기** 자, 잠시만요.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결국은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상대방 의도를 어떻게 그렇게 예단해요?

○**문진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협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협조 못 한다. 국민의힘이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협조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먼저 신청해 주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협치 협치 말씀하시는 데 민주당부터 협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다 얘기하시는 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임기 초에도 총무비서관은 다 나왔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거처럼 하고 있느냐고요.

○**조지연 위원** 김대중 정부 때도 임기 초에 나왔었고……

○**곽규택 위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문진석 위원** 뭘 하고 있어, 뭘!

○**조지연 위원**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초에 나왔었고……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이것 좀 끊어 주세요.

○**조지연 위원**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에 나왔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문진석 위원** 말할 때 당신도 얘기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왜 끼어들어요!

○**문진석 위원** 누가 끼어들었어. 내가 먼저 끼어들었어?

○**곽규택 위원** 책상을 왜 두드려요?

○**문진석 위원** 내가 먼저 끼어들었냐고!

○**유상범 위원** 문진석 수석님, 왜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지연 위원** 토론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문진석 위원** 국민의힘에서 먼저 끼어들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왜 반말을 하고 그래요. 상대방 당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문진석 위원** 내로남불이잖아요! 먼저 끼어들어 놓고 끼어드니까 뭐라고? 끼어든다고?

○**조지연 위원** 제 토론 시간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하는데 끼어든 사람 누구입니까?

○**조지연 위원** 제 토론 시간이에요!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 문 수석, 반말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적어도 상대 위원님을 존중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대토론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모든 총무비서관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재무·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분이 총무비서관인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특활비도 공개를 하는 이 정부에서 왜 총무비서관은 못 나옵니까? 특활비도 공개를 하시는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별정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를 무시합니까? 국회에 당연히 나와서 얘기 하셔야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치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행정과 재정 다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와서 국정감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사전에는 협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별일 때 민관의 협치라는 말은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중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여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직원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해야 할 역할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된 대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필요한, 안보실장 그다음에 경호처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국감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국감 증인을 준비된 대로, 여야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계속 논의해도 이게 오늘 춥혀지지 않겠지요, 의견이?

○박수민 위원 그래도 말할 기회는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기 그럴까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라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기 일단 한 분씩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언론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의 신분으로 당연히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흥분하시면서 부르면 안 된다 그러세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더 불러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연 뭐 하는 분이시길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가지고 정쟁을 유발할 것이다 하는 그걸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 정쟁이 유발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비서관 한 명이 나오는데 왜 정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더 불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 잘 모르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길래, 인사에 관여한다, 예전부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 왔다,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이겠지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허니문 기간까지 나오면서 정쟁이 유발될 것이 분명하다 하시니 반드시 불러서 그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불러 봅시다. 꼭 불러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오면 왜 정쟁이 유발되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우리가 국감에서 기관증인이든 누구든 증인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사실, 진실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들으려고 사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작년 운영위 국감 때 11월 8일 윤재순 총무비서관 당시 나와서 나토 3종 세트 물으니까 두 개는 빌렸고 하나는 선물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다 거짓말했어요, 국감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진석 수석께서는 그분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고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 그러셨어요. 국힘 위원들께서 운영위 전체회의 이름으로 윤재순, 정진석, 김성훈,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단 고발부터 하자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 뭐 불러 와서 거짓말해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데 사람만 불러 앉혀 놓으면 뭐 합니까? 작년 것 고발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김현지 부르자 그러는 것에 동의 할게요. 그것부터 하세요.

○위원장 김병기 다음,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고발 동의하면 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진석 위원 정쟁 안 해야지 부르지요.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상범 위원 가만히 계세요.

○문진석 위원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저의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김은혜 위원님 발언할 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 수록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현통이구나 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

국정감사가 부활한 88년부터 작년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모든 국정감사 회의록 보도자료를 봤지만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했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허니문이든 협치든 국민이 저희 위원님들께 부여했던 국정감사 기능을, 우리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 말씀 잘하셨어요. 특활비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면 그 좋은 일을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위원님들은 두려우십니까? 문고리 권력입니까? 아니면 만사현통, 인사 그리고 앞으로 총선, 지선까지 이분 휘하에서 벌어질 일이라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큰소리로 막으면 막으실수록 위원님들의 두려움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을 지켜 주시고자 한다면,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자 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명분 없는 예외를 둬서 김현지 비서관을 감싸면 더더욱 위원님들의 두려움만 커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저는 중인으로 출석하는 걸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여당에서 반론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주신 논점에 대해서만 토론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 대신에 대통령실장이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러면 부처에서도 장차관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와도 된다는 거랑 등가로 치환이 돼요. 저는 그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이게 관례 속에서 헌법이 발전하는 건데 민정수석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개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을 하고자 국회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공방은 여야 간에 항상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여기가 출석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국 아래 처음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냥 왔다 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김현지 비서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괜히 지금 덧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례대로 그냥 왔다 가시고.

왔다 가면 정쟁이다, 왔다 가면 새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 한다, 저는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면, 총무비서관이 그 정도급은 아니에요. 특활비하고 대통령실 생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가 오르는 거, 대미 협상,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신 논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무난하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권유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위원장 김병기** 짧게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그동안 행태를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정말 정부조직법에 무제한토론을 걸 일입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총무비서관을 부르고 싶으면 이런 거 협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총무비서관 부르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아까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사, 예산 이런 것들 물을 수 있다’. 당연히 물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당장 내일 일반 법안조차도 필버를 걸겠다는 이런 문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조지연 위원** 총무비서관이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버금가는 겁니까?

○**문진석 위원** 아니지요.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요구하니…… 우리도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요구를 들어주라. 정부조직법에 협조하세요, 그러면 불러낼 테니까. 됐습니까?

○**조지연 위원** 조건이 정부조직법까지 포함이에요?

○**김은혜 위원** 공당을 바꿀 정도로…… 와, 비서실장보다 세구나!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바꿀 정도 감이 아니라……

○**위원장 김병기** 말씀 끝나셨으면……

○**백승아 위원** 말꼬리 좀 그만 잡으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가 반론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제 말의 취지를 얘기한 거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기회 드릴게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기** 상대방 위원님이 발언할 때 그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아마 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 논쟁을 보고 있으면 어이없어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논리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점과 벗어난 말씀으로 논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여야 영수회담에 배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은 가진 게 많으니 양보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30여 년 넘게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외를 깨기 위해서는, 그런 상식과 보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설명과 논리를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드시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국정감사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지켜 왔던 이런 논리,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을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반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발언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총무비서관, 고작 총무비서관 하나 부르는데 정쟁이 나오고 하니문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법 개악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다 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것 누가 다 파기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석 위원 일반법도 필버 건다면서요. 일반법도 필버를 건다며.

○유상범 위원 글쎄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훌린 얘기일 수 있겠지요.

○문진석 위원 아니, 문자가 돌았어요, 국민의힘의 문자가.

○위원장 김병기 경청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남의 당 내용도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아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법들, 대법원장 청문회…… 법사위 진행 중에, 관봉 띠지에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아무 내용도 없이 단 네 줄을 가지고, 네 줄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회의 중에, 청문회 중에 일방 통과시키는 이 상황, 그러면 여기서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없는 야당이라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 상황에서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필버를 한다고 그래서 100일, 1000일 진행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민주당이 일방 중지시키잖아요. 힘없는 야당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필버고 지금 이와 같이 여당이 일방 독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가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잖아요, 필버.

그런데 이 상황을 느닷없이 김현지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당을 공격하고 거기다가 공당이라고 말하다니요. 민주당이 하는 게 공당입니까? 개딸들이 말만 하면 다들 꼬리 내려 가지고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굴욕을 감수하면서.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지금 토론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요. 이게 얘기가……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진석 위원** 협조 안 할 거야. 협조 안 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더 협의하세요, 두 분이서.

○**유상범 위원** 그렇게 대놓고 이런 데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김병기** 죄선을 다해서……

○**문진석 위원** 당연하지. 국민의힘이 지금 정쟁, 발목 잡고 오죽하냐.

○**유상범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병기**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뭐 하러 회의장에 앉아 있어, 그냥 따로 모여서 하지. 회의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병기** 운영위원회에서 품위를 지켜 주시지요.

두 간사님께서 더 최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김병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국정감사계획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협의 요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협의 요청을 한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22곳을 포함한 총 157개 기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국회기록원법안(위원회안)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12분)

○위원장 김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현희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기록원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제출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을 심사하여 국회기록원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의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장이 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 의견을 심사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제출한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을 심사하여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과 제1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문진석 간사님과 허영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동 서면동의에 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기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금 소위에서 어제 일방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안이 올라왔는데 그 관

련 법안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16번의 국회법 일부개정법안이 어제 발의돼 가지고 오늘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사실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결 절차도 없이 진행을 하신 게 일단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두 가지의 법안을 이 자리에서 동시에 의결할 수 없다는 게 국회법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은 변경되기 전의 법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상정을 한 것이고 14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순된 법안을 동시에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법안이 숙려기간도 없이 국회법에 정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정이 돼서 논의된다는 것은, 그러면 국회법 규정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 단계에서 상정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행정절차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기록원법에 따른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어저께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유상범 위원, 허영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안을 제시하실 예정이고……

○유상범 위원 내가? 무슨 소리야?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아, 문진석 간사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어저께 서면동의로 제출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의결……

○유상범 위원 제안은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51조 2항에 의해?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서면동의입니다. 안건을 서면동의로 제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를……

○유상범 위원 몇 조에 의해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국회법 51조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회는 제안을 할 수 있고…… 서면동의라는 규정은 없는데, 여기는? 이것은 위원회 제안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아닙니다. 국회법 제58조는 위원회의 동의로 제안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58조 몇 항입니까, 58조 10항까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51조에 대한…… 국회법 해설 책자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51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가 제안을, 의안을 제출할 수 있지요, 법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안을 하는 것은 제안을 하는데 몇 조에 의해서…… 그러면 제안을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안은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위원회안은 숙려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김영배 위원** 합의로 처리하는데 숙려기간이 뭐가 필요 있어요?

○**유상범 위원** 합의가 아니지.

○**김영배 위원** 위원회안이면 합의잖아.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동의 안 한 안이니까 그렇지.

○**김영배 위원** 그래도 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위원회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정리가 되는 것은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고 봐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위원회안은 숙려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근거 규정을 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병기** 근거 규정 찾아보시고요.

○**유상범 위원** 58조 4항은 소위에 직회부할 때의 규정이에요.

○**위원장 김병기** 일단 근거 규정 찾으실 때까지 다른 토론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어제 우리가 운영개선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반대했던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기록원법안에 대해서인데 제가 기록원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서 생략하고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위헌 소지가 있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켜서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지요.

몇 가지 문제를 좀 짚어 보자면 지금 올라온 법안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는 국회에서 고발이 없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사법부가 국회활동의 일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간섭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수사의 비공개성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그리고 당사자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진석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의 당대표께서는 거의 잠꼬대하듯 맨날……

○**박상혁 위원** 당대표가 왜 나와요?

○**박충권 위원** 야당 해체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 김병기** 토론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뿐입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당에 대해서 공당 자격 운운할 자격이 없

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사안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도 보면 고발을 하는 기관들이, 보십시오. 원래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법경찰과 공수처, 원래는 중수청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것과 김현지 비서관, 저는 총무비서관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등가 취급해서 이것 협의해 주면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상범 간사님, 반드시 김현지 총무비서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민주당에서 감싸고 싶은 사람인지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위원이었어요, 박충권 위원은. 그래서 어제 반대의견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언 기회를 주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게…… 법안 발언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발언까지 같이 하게 하는 것은 이게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곽규택 위원** 소위 위원이 왜 전체회의에서 발언 못 합니까?

○**박충권 위원**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위원장 김병기** 자, 조용히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발언권 좀 얻어서 합시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잠시만요.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토론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상대가 말할 때는 경청하시고 그리고 주제에만 집중하시고 비난은 최대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중간에 중단하겠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토론이 사실 건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백승아……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먼저……

○**위원장 김병기** 아,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래간만에 운영위에서 발언을 합니다. 오늘 아까 중인 문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민정수석이 역대로 한번도 사실은 나오라고 했는데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봉우 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재가 돼서 나온 것을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 가지고 이게 잘못 썼나 이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아까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구나, 마음도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법안 관련해서 중감법 문제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 사실은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삼권분립 체제를 지키는 데 매우 소홀했다는 자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중심제가 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 우리 스스로도 국회의 권능이나 권한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권한, 권력을 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이야기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개정되는 법안도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젓이 거짓말해 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우리의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그래도 신뢰하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이유도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기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정파 간에 생각이 달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저는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증 그리고 의도적인 회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현재 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저는…… 당연히 일부 문구를 고친다거나 이거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지적한 이런 기본 틀을 좀 강화해서 바꾸자고 하면 저는 전체 국민들이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님,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설명이 잘 안 돼서 좀 검토를 해 보긴 해야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납득하기 참 어렵네요.

○위원장 김병기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요 건은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요 건이 뭘 말씀하시지요? 요 건이 뭐지요?

○위원장 김병기 요 건, 서면동의에 관한 안건. 좀 더 연구하신다면서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유상범 위원 아, 동의하신 부분이오?

○위원장 김병기 예.

○유상범 위원 동의해서 의안으로 제출된 부분?

○위원장 김병기 예.

○**유상범 위원** 일단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해서는 더 안 하고……

○**위원장 김병기** 단 최수진 위원님이 그전부터 신청을 하셔 가지고 최수진 위원님 발언까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체토론입니까?

○**위원장 김병기**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국회기록원법 같이 보고 있는……

○**위원장 김병기** 아니요, 국회기록원법은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회기록원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치지를 않았거든요. 축조심사도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병기** 일단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마……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의결로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아요, 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안을 뭘 토론을…… 지금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토론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기**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뭘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김준혁 위원**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유상범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끝냈습니다. 그건 토론 대상은 아니잖아요.

○**문진석 위원** 5항부터 17항까지 상정했으니까 지금 기록원법도 하고 법안 다 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위원장 김병기**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고.

○**문진석 위원** 아니, 전체를 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병기** 그렇게 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서 되겠어요?

일단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 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저는 먼저 증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입법을 빙자한 사법 절차에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소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사법에서 못 하는 것, 믿음직하지 않은 것,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청문회나 국감에서 증인을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증인 제대로 신청 안 해 주고 참고인 마음대로 하시고 필요하면 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정말 입법이고 민주주의고 모든 것을 무시한 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회기록원법에 대해서 왜 이것이 위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 의원이나 정당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과 충돌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국가기록정책 모법 15조에 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전체 국가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기록원 설립과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같은 것은 당연히 회의 논의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그 자체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법권을 무기로 기록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맛에 따라 선별하고 누락하고 과잉 기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립성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당·의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당법에 의한 기본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중심체인 정당활동을 또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중복 또 예산 낭비, 인력 낭비들이 있습니다. 이미 도서관 산하에서는 기록보존소, 사무처 속기과 회의록 담당 부서, 의안정보시스템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제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입법례가 부재합니다. 입법부 산하에 이렇게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차관급의 독립 기관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입법독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어제 소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증감법은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입법 공백이었던 겁니다. 아니, 법에 입법 공백이 있어서 그것을 메워 가자는 것을 왜 국회의원이 반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위증을 하고 싶은데 특위가 종료돼서…… 아니, 위증을 하고 싶은 게 아니지요, 위증을 했을 때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을 못 해요. 그래서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어떻게 사법권 침해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충권 위원 고발을 하자가 아니지요.

○백승아 위원 제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거짓 증언 했거든요. 그런데 특위가 종료돼서 저희 고발을 못 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위증할 사람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전 차단하는 겁니까? 저희 더

불어민주당은 위증한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인 신청했어도. 그래서 이 법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기록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당에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를 않아요. 의원들이 자진해서 기록원에 기록을 줄 때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내용도 지금 보관만 하고 있지 어떤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7명이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45명 정도 중원하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기록되면 곤란한 정당활동을 하십니까? 기록하면 안 돼요? 뭐 숨기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록하고 싶으시잖아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기록을 하자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안을 반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기록하면 곤란한 게 있나?’ ‘뭔가 위증했다고 고발하면 안 되는 중인들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조지연 위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예요.

○**백승아 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백승아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재명 정부니까 더 저희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정부에 불리한 거라고 안 하지 않아요. 국가에 필요하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여도.

이전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보호하려고 반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반대하시면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박충권 위원** 우리는 보호 안 해요, 보호 안 해요.

○**백승아 위원** 보호 안 하면 통과시켜야지요.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가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4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힘 전신 의원들은 대법원 막 침범했어요. 들어가 농성을 했어요, 거의. 그 정도 돼야 사법권 침해하는 거지 국회증감법 냈다고 사법권 침해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병기** 발언 마쳐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중간에 국회사무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기록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돼 있는 건수가 400만 건 정도 되는데요. 400만 건 중에 지극히 사무적으로 생성된 건이 380만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약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은 일종의 사무적 기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치적 산물인 그리고 행정·정치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국회의 기능 중에서 의원님들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기록을, 지금 기록보존소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물건을 그냥 두는, 수집·보관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록을 국회기록원에서 수집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추후에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국회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2년 치 자료를 기증했는데 제가 기증한 자료가 4000건 정도입니다. 나머지 10여 년 치 기록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꽤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이라든지 왜 차관급이냐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예산과 인력의 범위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75명이 필요한데 기록보존소에 이미 2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의 박물관에서 3인이 들어가면 30명이 되고요. 그리고 직무 조정하는 TF에서 약 10명이, 도서관에서 10명의 사서직이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면 순증하는 인원은 약 35명 정도고요. 인건비 등을 합쳐서 30여억 원의 예산이 더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성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차관급이냐에 대한 질문이, 의문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도 적은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삼백 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의 다양하고 중요한 자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된 중요한 자료가 사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원장이 일종의 수집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한 가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사무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다라는 점에서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토론을 계속해야 되나요?

○허영 위원 몇 개 좀 오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저도 어저께 소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논의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힘 소위 위원들은 반대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법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은 안 들어오셨고 또 두 분은 진행하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표결 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표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가 놓고 그것을 강행 처리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수진 위원께서 국회의원 300명을 사적 기관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처럼.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산하는 의정활동의 기록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의 그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연구와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요청에 의하거나 기증에 의하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입법 미비로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고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청문회에 와서 위증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법 공백과 절차적 공백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 증언감정법입니다. 이 부분들이 일부 전임 정권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 왔던 사람을 향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 자체의 권능과 역할과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증감법과 국회기록원법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입법 공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 중에 문제가 있는 법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칙 2조를 보시면, 저는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칙 2조입니다. 보시면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다 소급한다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급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형별에 관한 것,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소급입법이 헌법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게 과거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민주당 위원님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있었던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조항, 어느 규정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이거를 적용

한다 그러면 위증죄의 시효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까지도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급을 한다고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을 부칙에 넣어 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건들이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가지고 좀 쟁점이 흐려지는데, 국회기록원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어느 기관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20여 명 있던 인원을 70명까지 늘리면서 인원을 확장하는, 조직과 예산을 확장하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국회에서 차관급 기관을 신설하면서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법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겠다? 이것은 원래 국회가 갖는 기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근 위원** 여야 가르면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기** 예.

김준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김준혁 위원**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국회기록원법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제가 역사 전공했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조선시대 정치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된 일을 해 왔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록 때문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국왕의 권한은 어느 법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 통수권을 갖고 있는지 사법권을 갖고 있는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로 철저하게 사관과 승정원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엄청난 무사 격이었던 태종이 말을 타다 떨어졌어요. 태종이 너무 창피해서, 기록에 남겨지면 자기가 말 떨어진 것 창피할 것 같으니까 사관한테 ‘내가 말에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사관이 그 것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이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잔인한 살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기록을 열람하자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임 국왕의 기록은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세종이 끝내 그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거 역사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바로 기록이 갖고 있는 투명성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삼백 분의 헌법기관과 또 국회 전체 그리고 여야 정당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록을 남겨 놓음으로써 우리가 해 왔던 일들에 대한 투명성, 우리가 했던 잘못, 우리가 해 왔던 허위, 우리가 했던 잘한 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국회기록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을 많이 남기는 정당, 기록을 많이 남기는 국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기록원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기록을 제출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매우 소략한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에 대한 부족 때문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건전하고 투명한 기록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국회기록원의 창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대체토론하면 보통 5분을 주는데, 법안 논의에 너무 짧은 건데요.

○위원장 김병기 일단 3분에서 시작하시지요.

○김은혜 위원 저는 중언감정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이나 민법, 형법 사항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법을 만들게 되어 있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을 봤을 때 먼저 진정소급효, 처벌을 위해서 입법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로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인을 전제로 한 소급효 인정은 저는 형법이나 아니면 절차법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저어해야 되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법 간의 충돌이 없을까 혹은 법 간에 형해화할 수 있는 우려가 없나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15조의2와…… 14조 1항의 경우에는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의2 항에 보면 뒤에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본회의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의 보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누가 어떤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이 단독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봤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조치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해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감사 관련 법안에도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우회해서 국회본회의에서 대충 서면보고 받고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입법부가 마치 범죄 수사를 하는 사법부처럼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자꾸 소급입법 얘기를 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이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으로 해서 과거에 처벌받지 않던 것들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실체적으로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들을 공백을 메우는 것들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과거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소급입법 얘기를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면서 마치 진정소급효에 따른 위헌 문제를 얘기하셔서 이것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 위헌 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요.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제 소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방식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정리된 것들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협의된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조치를 결의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절차상에 있어서 큰 혼란은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었고. 대체로 어제 소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던 것들을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소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한 번씩 발언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기회를 나중에 드릴게요.

강선영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온 것은 사관과 승정원의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어서, 과연 사관과 승정원의 투명성을 국회만 강조할 것이냐? 여당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대변인 발언했던 것 삭제해서 문제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래서 김준혁 위원님께서 조선시대 정치사를 연구하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강조하시려면 먼저 정부 여당이 모범을 보이시는 게 우선 아닐까, 그리고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것만큼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국회에 그런 기록원이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굉장히 여야 간에 모든 것이 다 합의와 그다음에 배려와 관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사실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었을 정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협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정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록원법 이렇게 옮겨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진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아까부터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국정감사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정쟁거리가 되어야 될 정도로 서로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할 그 정도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주 급하고 시급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정도의 법이 아니면 일단 그것은 좀 묻어 두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고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면 어떨까, 그것을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발언을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지요.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기** 잠시만요.

김은혜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수민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좀 돌아가면서 해 주시지요.

○**서미화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두 번씩 막 하시고 우리 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빨리 의결합시다.

○**위원장 김병기** 위원장은 접니다.

○**문진석 위원** 위원장이라도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셔야지……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편파적이십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씩 주시고.

○**위원장 김병기**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김병기** 충분히 들으시지요.

○**문진석 위원** 시간이, 갈 사람들도 잡아 놨는데 지금 12시 넘어 가지고……

○**위원장 김병기** 잠깐만 계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거 취지가 대부분 동의가 되는데 아마 이게 절차적 일정상 좀 급하다 보니까 서로 이격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에 좀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급합니까, 이렇게? 일정이 막 오늘, 저희가 소위도 어제 이격이 있는데 진행하고 오늘도 진행해야 될 그런 시간상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과거부터 기록원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빨리 할수록 위원님들의 기록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특별히 시간상 저희가 압박이 있는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주의를 좀 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토론 종결하지요.

○**김은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기** 그것만 그러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지금 어제 소위 회의 속기록을 한번 가져와서 검토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서면보고로 계속 끝나는 부분은 본회의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위임을 해서라도 논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문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소위 속기록을 보니까 6항을 신설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소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위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발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

라서 본회의에서 제대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없으니 법사위에 넘긴다는……

○**문진석 위원** 김남근 위원 속기록만 보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속기록을 보세요.

○**김은혜 위원** 모든 속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게 정회 상태에서 논의를 했어요.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데까지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 없이 소위가 종결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기** 허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영 위원** 그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회 상태에서 논의가 됐고, 6항에 대한 논의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그러면 제4항의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논의를 회부할 수가 있고 또한 필요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할 수 있는 등 그 필요한 조치가 4항에 열거되어 있어서 본회의에서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토론을 요청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위임규정이 마련됐다라고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김남근 위원의 동의하에 소위원회안을 의결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5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5항.

○**허영 위원** 그러니까 5항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은혜 위원** 아니, 5항에는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영 위원** 본회의 또는 의장이…… 위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고 그다음에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 위원** 아니,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이 수사기간 연장하고 본회의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허영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가 여기 없다고요, 법사위까지.

○**허영 위원** 본회의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는 게……

○**김남근 위원** 법사위에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허영 위원**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넘겨서 토론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에 넘겨서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유상범 위원** 이걸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기간 연장하고 징계하고 하는 걸?

○**허영 위원** 아니,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양당이 만약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그 안건을 의결하면 그 안건대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다 토론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탄핵안에 대해서 법사위에 청문회도 의결해 가지고 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한덕수나 이런……

○**허영 위원**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

○**유상범 위원** 그분에 대한 고발을 해 가지고 고발이 왔는데 수사기간이 2개월 초과되

면 본회의 열어서 거기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김병기** 야당 위원님들은 한 번씩 다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 원내대표님.

○**유상범 위원** 저도 발언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정말 마지막입니다.

○**유상범 위원** 5분 주시지요.

○**위원장 김병기** 아니요, 3분만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다른 데는 다 5분 줬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국회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삼권분립의 형태에서 행정부에까지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또 사법작용에도 국회가 관여하는 이러한 법안은 결코 채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소급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미 특별위원회가 소멸이 돼서 고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고발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 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제2조에서 '15조 4항의 개정규정은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에서'라고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22대만 제한이 돼서 적용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법문 해석은 문리해석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래 놓고 지금 완전히 확도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총장님, 의회에서 수사기관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무처에서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법사위에서 보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은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소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라는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거기에 경위가 13명이 나와 가지고 각 위원들 앞에서 둘러싸고 굉장히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구체적인 몸싸움이 있거나 회의가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왜 경호원들이 위원들 앞을 막아서고 13명이 가서 위원들의 피켓을 정회 중에 일방적으로 경호원들이 다 철거를 하는 겁니까? 경호원들은 부착된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맞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장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장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행동을 제지하는 것 외에 부착물을 압수하고 철거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은 어

디에도 없습니다, 경호 행위에.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김병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법에 나와 있고요, 위원장님이 질서유지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경호권을 발동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수의 위원들이,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이 4명의 위원이 재석해 있는 상황에서 팻말을 부착했다고 3명을 퇴장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상황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항의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모욕적인 발언도 나오지요. 이런데 경호원 13명이 나와서 겨우 몇 명 안 되는 위원을 둘러싸고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팻말을 강제로 철거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과잉해서 경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법상 위원회의 질서유지권은 위원장에게 부여돼 있고요, 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전 법사위원장께서도 많은 퇴장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첨예했던 적이, 점점 여야 간에 첨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아니, 과잉 경호를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사무총장께서 아까 제 질문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호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기 말씀 마쳐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송언석 원내대표님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국회증감법 관련해 가지고 15조 1항에 위증 고발 기관을 검찰에서 공수처·검찰·경찰로 확대를 하고, 4항에 '종료된 특위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조의2 제2항에 보니까 '수사기관 이첩 시 본회의에 보고한다', 3항에는 '수사가 미완 시 중간보고 하고 의장·위원장이 수사기간을 연장한다', 또 4항에는 보니까 '중간보고 위반하면 본회의·상임위가 기관장에게 수사 인력 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고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이 또 중간보고를 받는 거예요. 고발인이 수사를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고 또 수사기간을 연장하라고 승인도 해 주고 또 지연되면 징계조치도 요구하고, 이게 1인 3역도 아니고 1인 4역, 1인 5역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기괴한 형사 절차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

다.

이런 법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문제 있는 규정은 손을 보고 넘어가야지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여기에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좀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수석한테 좀 질문을 해 봄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늘 의사일정 표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국회기록원법안이 위원회안이라고 되어 있고 14항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위원회안이 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위원회안은 이게 당초 국회의장 의견 제시, 의장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시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의견……

○**송언석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13항의 국회기록원법과 14항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 의장이 제시한 법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의장님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의장님의 의견 제시한 것은 전부 위원회안으로 올라갑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통상 위원회안으로, 소위에서 의결하면 위원회안으로 제시합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15항에 있는 국회도서관법도 의장이 제시한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16항하고 17항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16항도?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16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회법, 상임위 조정에 따른 그 법을 서면동의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언석 위원** 아니, 내 질문은……

○**위원장 김병기** 1분 더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아니, 내 질문은 왜 이 부분이 위원회안으로 되느냐고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서면동의를 하고요, 문진석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께서 어저께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을……

○**송언석 위원** 그 법안을 대리해서 제시했잖아.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대표, 위에……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렇게 되면 안건이……

○**송언석 위원** 아니아니, 위에 보면 5항부터 11항까지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위원회안으로 들어오냐고.

○**문진석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문진석 위원** 아까 그것 충분히 설명했어요, 유상범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아까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언석 위원** 나는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날짜에 같은 법률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개씩

이렇게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해서 하나로 할 겁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짚어 보고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16항.....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어저께.....

○**송언석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김병기** 자, 발언 마쳐 주시지요.

○**송언석 위원** 이 법안 자체가 동일한 국회법을 가지고 두 번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의결은 오늘 1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통합해서 결국 1건으로 의결할 겁니다.

○**송언석 위원** 안건이 2개인데 어떻게 하나로 의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6항하고 17항은 소위에서 아직 논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병기** 자, 그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국회기록원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서는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동일 내용 반복은 금지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12조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 일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언석 위원** 이의가 많습니다. 축조심사를 왜 안 해요?

○**위원장 김병기** 표결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언석 위원** 축조심사를 해야지 이 중요한 내용을 왜 안 해요?

○**곽규택 위원** 의견 많습니다. 8조를 보셔야 됩니다, 8조를.

○**백승아 위원** 진행해 주세요.

○**서미화 위원** 표결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계속 의견 있다고 말씀드ري는데 왜.....

○**유상범 위원**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들어야지.

○위원장 김병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수민 위원 안건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십시오. 헛갈립니다.

○위원장 김병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축조심사 생략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찬반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에서는 정말로 노력 많이 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늘 하루 시간이 충분하고 오후에도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꼭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셔야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공청회를 못 할 만큼 급한 법입니까, 이게?

○**유상범 위원** 급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병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8인……

○**허영 위원** 13년 전부터 논의했던 법안이에요.

○**위원장 김병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찬성 17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너무해요, 너무해. 오후에는 시간이 없나?

○**백승아 위원** 발언 기회 많이 드렸잖아요, 편파적으로.

○**위원장 김병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회기록원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국회법에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은 모두 국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오늘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14항과 제16항의 개정 내용을 하나로 합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위원회안 등의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국회기록원법 의결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기록원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법률안 의결을 통해 국회기록원이 입법부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 등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기록원의 설립과 내실 있는 운영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 등 기관 출석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12시23분)

○위원장 김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미래연구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 인가 동의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입니다.

이사회에서 개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관 개정의 취지대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 성과를 제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선영 곽규택 김남근 김병기 김영배 김은혜 김준혁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백승아 서미화 송언석 신장식 오세희 유상범 이기현
이훈기 전진숙 조인철 조지연 채현일 최수진 허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기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9월 22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9. 23. 의장 제의)

9월 23일 회부됨